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96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 강민국 · 정동만 · 박성민

김영식 • 유의동 • 윤창현

정희용・金炳旭・한무경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 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단서, 제39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위반행위 등의 공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 당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 2.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 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 지정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생 략)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8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	
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	
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u>2년</u> 이내에는 다시	<u>5년</u>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2(위반행위 등의 공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

- 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7항제4호에 따라 지 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 2.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
 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 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